

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 3의3] <신설 1997.12.30>

특허법원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

과 명	분 장 사 무
총 무 과	서무·인사·관인과 도서의 관수·문서·연금·기획·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특 허 과	특허 등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·심판의 참여·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와 기록·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